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김 순 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12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6.

발 의 자 : 김순옥, 고찬양, 박학용,  
신찬호, 이충현, 김성한

## 1. 제안이유

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합계출산율은 0.58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였음. 이에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의 정비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전부개정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출산·양육 정책 발굴과 지원 및 출산·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6조)

나.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(안 제8조)

다.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일·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 
사항을 명시함(안 제9조)

라.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마.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 
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협조부서 : 가족정책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1. 19. ~ 2024. 1. 23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출산 및 양육 지원”이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·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.
2. “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경감”이란 임신·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산후조리 지원 등과 같은 인적·물적 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”이란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육아지원 등과 같은 인적·물적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편의서비스”란 자녀 양육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이동수단·가사

서비스 등과 같은 비용지원 및 인적·물적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,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,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
3.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
4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조사 및 연구)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·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출산 및 양육지원)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
2. 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3.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
4.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5. 자녀양육가정을 위한 편의서비스 지원
6. 자녀양육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원
7. 출산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)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, 자녀를 출산·양육하는 구민이 일

· 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일·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
2. 여성의 경력보유 유지를 위한 지원
3.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중단 및 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한다.

제11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 5. 23.]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... <생략>..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4.>

**제32조(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4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## 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**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혼인과 출산)**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



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**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홍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